

**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계좌통합관리서비스”(이하 “본 서비스”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 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 <p>2~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6~12. (생략)</p> <p>13. “핀테크기업”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</p>	<p><b>제2조 (용어의 정의)</b>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상호 금융기관-----</p> <p>-----해지하며,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“계좌지급정지” 등을 -----.</p> <p>2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계좌지급정지”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·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.</p> <p>7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“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”(이하 “이용기관”이라</p>	<p>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</p> <p>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 <p>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 <p>호 체하</p> <p>이용기관 의미 확대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.</p> <p>14. (생략)</p> <p><b>제4조(이용채널)</b>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창구,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<b>제9조(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</b> 고객은 핀테크기업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핀테크기업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10조(조회)</b>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</p>	<p>합) ----- ----- ---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4조(이용채널)</b> ----- ----- ----- 금융회사 창구-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----- ----. 단,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9조(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</b> -----이용기관 ----- ----- 이용기관의 ----- -----.</p> <p><b>제10조(조회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카드 정보 등을----- -----</p>	<p>(금융기관 포함)</p> <p>호 체하</p> <p>이용기관 용어 반영</p> <p>이용기관 용어 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<u>카드정보 등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2조(계좌지급정지)</b> ①고객은 제5조,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. 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·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. 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</p>	<p>자구 수정</p> <p>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12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4조(약관의 변경)</b> (생략)</p> <p><b>제15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b>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 ① (생략) ②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 ③ (생략)</p>	<p>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·요금·대출원리금 등의 미납,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13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5조(약관의 변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6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b> ----- ----- ① (현행과 같음) ②상호금융기관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체하</p> <p>조체하</p> <p>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</p>